

어 린 이 데 공 원 관 리 사 무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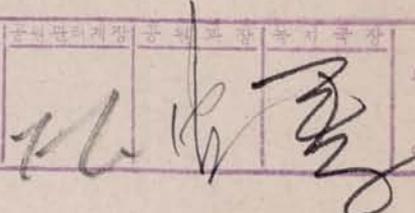
어공 410-⁵⁸⁷ (45-7054)

77. 12. 9

수신 서울특별시장

참조 공원과장

제목 공원시설 관리허가 보고

계	관리관리계장	공 원 과 장	부 서 장	공 원
				

1. 공원 410-438 (77. 12. 8)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데 호로 승인된 공원 시설 관리허가에 대하여 별첨 허가서 사본과 같이 허가 하였기에 보고합니다.

첨부 공원 시설 관리허가서 사본 1 부. 끝.

1977. 12. 12	출제
제 836	지시
	시
	사
	지
	시
	지
	시

어 린 이 데 공 원 관 리 사 무 소 ^{가자} 



41



42

사본

원본
조필

공원시설 관리허가증서

=====

공원법 제 12 조 1항 동법 시행령 제 8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원 시설 관리허가함.

1. 허가내용

- 가. 허가자주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능동 산 3-8
- 성명 : 세한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구분규
- 나. 공원의명칭 : 어린이대공원
- 다. 면적 : 면적 721 평 위치상 유택시설 (비행기, 회전목마,
 아폴로외자, 어린이차) 매점 및 부대시설
- 라. 목적 : 상기 내용의 유택기구 및 부대 시설운영
- 마. 관리기간 : 1977. 6. 3 - 1981. 7. 2

2. 조 건

- 제 1 조 :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원조탁에 의한다.
(단, 조탁 지정시까지 대공법 사용료를 대신 120 원, 소인
 60 원을 징수 할수 있다)
- 제 2 조 : 본 사업관리 운영에 대하여는 매년 말입기준으로 사업실적을
 입단 1 원 말입까지 제출함.
- 제 3 조 : 관리자는 신중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시설물 이용자에게 항상
 경험하여야 하며, 안전 및 보건위생에 관전을 기하고 관리물건
 및 그 부속물 일체를 유지보존할 책임을 진다.
- 제 4 조 : 관리자는 당시의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다음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42
 - 가) 시설물의 신축, 증축, 이전 또는 운영을 변경하거나 교체하는
 일 (단, 영리한 보수 및 교체는 당시 직원의 지도감독을 받

(이것이 수습수 있다)

영세업종인 가내수공업

업종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 5 조 : 영세업종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 6 조 : 영세업종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 7 조 : 영세업종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 8 조 : 영세업종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KIST) 나 연구개발사업의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 9 조 : 영세업종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 10 조 : 영세업종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 11 조 : 영세업종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 12 조 : 영세업종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세업종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세업종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세업종에 대한 지원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44

다음 인정한다.

(단, "다"는 "다" 양의 외하여는 허가를 취소 변경할 경우의
불리하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양사의 특약책임은 없다)

- 제 13 조 : 본 유죄시선 승인을 위하여 전문기관이 전문적인 사항을 의뢰
하였을시 수수료는 수익가자가 부담 하여야 한다.
- 제 14 조 : 본 허가후 새로운 사실이나 사건의 변동, 및 관계법규의 정비
가 있을 때에는 본 허가의 취소, 유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
정품의 이전, 또는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양사가 임방적으로
행사할수 있으며 불리자는 이에 대하여 하등의 불이익이나 보상
을 주장할수 없다.
- 제 15 조 : 본 허가를 취소 변경할 때에는 불리자는 양사가 지정하는 기일까
지 감리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단, 불리자가 본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양사가 이를
집행 하고 그 비용을 불리자에게 배상 시킬수 있다.
- 제 16 조 : 본 유죄 시선 감리상 필요로 할 때에는 상기 제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 조건을 부합수 있다.
- 제 17 조 : 어공 410-210 (77. 4. 18) 호로 독산 공원사업 집행허가 및
어공 410-280 (77. 6. 3) 호로 독산 공원 사업 임시감리허가는
본 허가로 대체한다.
- 제 18 조 : 본 허가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양사의 해석에 따른다. 끝.

1977 년 12 월 9 일